

2024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일반 및 특별전형 시행공고

「건축사법」 제14조 및 「동법 시행령」 제7조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일반 및 특별전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2월 8일
국 토 교 통 부 장관
대한건축사협회 회장

<p>1. 응시원서 접수</p>	<p>【 응시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함 】</p> <p>○ 기간 : 2024. 1. 3. (수) 09:00 ~ 1. 10. (수) 18:00까지</p> <p>○ 방 법 : 홈페이지(http://exam.kira.or.kr)에 접속하여 접수 ※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“건축사시험 관리 시스템”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</p> <p>○ 기 타 : 응시수수료(125,000원)외에 소정의 처리비용(인터넷결제처리비용)이 소요</p> <p>1)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사람은 대한건축사협회 또는 각 시·도건축사협회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접수</p> <p>2) 접수취소 및 환불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[붙임] 자료 참조</p> <p>○ 장애인 등 응시편의 제공 :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이 편의지원을 희망할 경우 원서접수시 신청서를 제출하고 유선으로 접수여부를 확인한 다음 원서접수 마감 후 3일 이내에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(시장·도지사·군수·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명서)를 대한건축사협회 시험팀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 ※ 장애인 등 응시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“건축사시험 관리 시스템” 사이트 공지사항 참조</p>			
<p>2. 응시자격</p>	<p>○ 건축사 자격시험 일반전형</p> <p>(1) 「건축사법」 제13조에 해당하는 사람</p> <p>가)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업을 하고 있는 건축사사무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또는 4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</p> <p>나)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과 같은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통틀어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p> <p>(2) 「건축사법 시행령」 부칙<제23821호> 제4조 “실무수련을 받은 것으로 보는 실무경력에 관한 특례”에 해당하는 사람</p> <p>○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</p> <p>(1) 「건축사법」 부칙<제10756호>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</p> <p>건축사에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사에비시험의 응시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(제1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그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4년 이상)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쌓은 사람</p> <p>※ 응시자격이 없는 자가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은 무효로 처리하며, 응시자격을 확인한 합격예정자가 추후 제출하는 서류에 의함</p>			
<p>3. 시험일자 및 장소</p>	<p>○ 시험일자 : 2024. 3. 9. (토)</p> <p>○ 시험장소 : 2024. 2. 14.(수) 국토교통부 홈페이지,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·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예정</p>			
<p>4. 과목, 배점 시험시간 출제범위 답안 작성방법 합격기준</p>	<p>교 시</p> <p>1교시</p>	<p>1교시</p> <p>대지계획</p> <p>100점</p> <p>09:00 ~ 12:00 (3시간)</p> <p>배 점</p> <p>100점</p> <p>13:00 ~ 16:00 (3시간)</p> <p>16:30 ~ 19:30 (3시간)</p> <p>출제범위</p> <p>○ 배치계획, 대지조닝, 대지분석, 대지 단면, 지형계획, 대지주차 : 6과제 중 2과제 선택적 또는 복합적 출제</p> <p>○ 평면설계</p> <p>○ 단면설계, 구조계획, 설비계획, 지붕설계, 계단설계 : 5과제 중 2과제 선택적 또는 복합적 출제</p> <p>답안 작성방법</p> <p>○ 과제별로 A3 일반용지 답안지 1매에 자(삼각자 또는 막대자)를 이용하거나 프리핸드로 작성</p> <p>합격기준</p> <p>○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60점 이상 득점시 합격</p>	<p>2교시</p> <p>건축설계 1</p> <p>100점</p> <p>13:00 ~ 16:00 (3시간)</p> <p>16:30 ~ 19:30 (3시간)</p> <p>출제범위</p> <p>○ 평면설계</p> <p>○ 단면설계, 구조계획, 설비계획, 지붕설계, 계단설계 : 5과제 중 2과제 선택적 또는 복합적 출제</p> <p>답안 작성방법</p> <p>○ 과제별로 A3 일반용지 답안지 1매에 자(삼각자 또는 막대자)를 이용하거나 프리핸드로 작성</p> <p>합격기준</p> <p>○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60점 이상 득점시 합격</p>	<p>3교시</p> <p>건축설계 2</p> <p>100점</p> <p>16:30 ~ 19:30 (3시간)</p> <p>출제범위</p> <p>○ 평면설계</p> <p>○ 단면설계, 구조계획, 설비계획, 지붕설계, 계단설계 : 5과제 중 2과제 선택적 또는 복합적 출제</p> <p>답안 작성방법</p> <p>○ 과제별로 A3 일반용지 답안지 1매에 자(삼각자 또는 막대자)를 이용하거나 프리핸드로 작성</p> <p>합격기준</p> <p>○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60점 이상 득점시 합격</p>
<p>5. 합격자 발표 및 제출서류</p>	<p>○ 합격예정자 발표 : 2024. 4. 26.(금) 국토교통부 홈페이지,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·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예정</p> <p>○ 합격예정자 서류 제출기간 : 2024. 5. 1.(수) ~ 5. 3.(금) 18:00까지 ※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및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은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시 별도 공고</p> <p>○ 최종합격자 발표 : 2024. 6. 19.(수) 국토교통부 홈페이지,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·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예정</p>			
<p>6. 응시자 지침</p>	<p>○ 응시표,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 둘 다 지참 <모바일 신분증 사용불가> ※ 신분증을 미지참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</p> <p>○ 제도용품 : 최대 가로650mm×세로450mm 이내 규격의 제도판 1개 (※ 규격초과 제도판은 사용 불가) 흑색연필, 삼각자, 스케일자, 소형전자계산기 등 제도용품 (응시자가 임의로 제작한 유사용품은 사용 불가) ※ 중·고등학교 책상(가로60cm×세로40cm) 1개 위에 제도판을 올려놓고 시험 실시 (보조책상 1개 지급)</p>			
<p>7. 주의사항</p>	<p>○ 응시자는 시험시작 10분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, 시험개시 후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음.</p> <p>○ 응시표 미지참자는 시험시행 당일 시험장에 마련된 응시표 출력 장소에서 응시표를 재출력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○ 답안지, 답안작성 트레이싱지(교시마다 1인당 2매) 및 깔판용지(1인당 1매)는 시험시행본부에서 배부하며 개인이 준비한 용지, 별도의 책상, 제도대 등은 일체 시험실에 반입하거나 사용할 수 없음.</p> <p>○ 시험실내에는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며 공식적인 시험시간 관리는 시험시작 신호와 시험종료 신호로 이루어짐.</p> <p>○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시기 바라며, 휴대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를 시계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. ※ 휴대폰 등 무선통신기기 무단행위자 부정행위자로 간주처리함</p> <p>○ 일반계산기가 아닌 공학용전자계산기는 시험실에서 리셋(RESET)한 후 사용가능하나, 가급적 일반계산기 사용을 권장함.</p> <p>○ 응시원서의 기재오기·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와 시험답안지의 기재착오·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</p> <p>○ 부정행위자는 「건축사법」 제15조의2(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)에 따라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, 해당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.</p> <p>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(044-201-3776~7)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시험팀(02-3415-6871~5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			

붙임 응시원서 접수취소 및 환불 안내

◎ 수수료 환불 근거 : 「건축사법 시행규칙」 제10조

◎ 접수취소 시 수수료 환불

환불기간	환불요율	비 고
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취소하는 경우	100% 환불	원서접수 기간 내 환불처리
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	60% 환불	접수취소기간 종료 후 일괄 환불처리
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	50% 환불	"

※ 접수 취소 및 환불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“건축사시험 관리 시스템” 접수취소 신청 매뉴얼 참조

◎ 시험당일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

· 대상자 및 첨부서류

구분	사 유	환불요율	첨부서류
1	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입원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	100%	입원확인서 < 단, 입원기간내 시험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>
2	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, 조부모, 형제, 자매, 배우자, 자녀가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		가족관계증명서류 사망진단서
3	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전염성이 있는 질병으로 인해 국가(공공기관 포함) 및 의료기관의 진단에 따라 격리 또는 감염확정 판정을 받은 수험자		입퇴원확인서, 진단서, 통지서
4	북한의 포격도발 등 심각한 국가 위기단계로 휴가, 외출 등이 금지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인 및 군무원인 수험자		중대장 이상이 발급한 확인서
5	불가항력의 천재지변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 대중교통 수단이 두절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		경찰서 확인서 등

· 환불 신청기간 및 방법

-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신청서와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대한건축사협회로 방문 또는 우편, 메일(testkira@naver.com) 신청

※ 자세한 내용은 “건축사시험 관리 시스템” 공지사항 안내문 참조